

학습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 필수법정교육-2018)

1차시-의료기관평가 인증제(1) -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인증조사 개요

*2주기 인증제도 개정 방향

- ①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한다.
- ②조사결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③인증의료기관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중간 자체 조사 방법을 보완한다.
- ④인증기준을 일원화한다.

*2주기 인증에서 최우선관리 기준

- ①투약 및 모니터링
- ②심폐소생술 관리
- ③감염관리체계
- ④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해당하는 주요 기준 내용을 최우선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중간 자체조사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 ①인증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및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소비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법에 근거하여 인증제가 시작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③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인증평가

- ①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인증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증조사 희망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후부터 지정할 수 있다.
- ②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과 한방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시조사 요건

- ①인증 받은 연도에 대비하여 입원 환자 수 또는 수술 실적에서 1/3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단, 요양병원의 경우 1/2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
- ②인증 받은 연도 대비 인력, 시설 및 허가 병상 수에 1/3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단, 요양병원인 경우 1/2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
- ③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과 통합했을 경우 또는 인증 만료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병원과 통합했을 경우

2차시-의료기관평가 인증제(2) - 인증조사 등급 판정 및 인증조사 절차, 추적조사방법

*인증 본조사시 병원현황 발표 내용

- ①병원의 역사 및 지리적 위치 소개
- ②병원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소개
- ③인력현황(직종별 인원, 의료진 구성 등)의 세부사항인 주요 서비스 영역, 특성화 센터, 병상수(전체 및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부서 병상수), 외래 및 입원환자수, 응급 및 중환자수, 평균재원일수, 병상가동률 등에 대한 현황 발표인력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
- ④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현황 및 활동 사례 소개

*인증조사 등급 판정기준 중 '인증' 충족 요건

- ①전체 조사항목(ME)의 평균점수가 상급종합병원은 9점 이상, 종합병원 및 병원은 8점 이상
- ②각 기준(Standard)의 조사항목(ME)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
- ③각 장(Chapter)의 조사항목(ME)의 평균점수가 상급종합병원은 8점 이상, 종합병원 및 병원은 7점 이상

*인증조사 절차

- ①조사위원의 조사내용과 조사를 위한 인터뷰 등 조사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녹음 및 촬영 등은 금지한다(조사 전·후 기념촬영 제외)
- ②의료기관은 협조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 ③조사팀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병상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스템 추적조사

- ①관련서류 확인, 담당자(관계자) 면담 후 현장을 확인한다.
- ②병원현황 발표는 진행하며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현황 활동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 ③ IT는 조사팀 당 최소 10case 이상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다.

*개정된 2주기 인증기준

- ①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로 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함
- ②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확대 실시함
- ③성과관리를 위한 질 지표관리 항목을 추가함

3차시-의료기관평가 인증제 : 2주기 급성기 인증조사기준(1)

*성과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범주

- 환자안전 지표 범주가 해당된다.
- 질환영역 지표가 해당한다.
- 진료영역 지표 관리이다.

***응급실 감염관리에 관한 신규 기준**

- 응급실 내원 환자 및 내원객의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시설과 환경을 관리한다.
- 직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환자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항목**

- 환자권리 보호를 위하여 신체 억제대 사용 및 격리 항목이 추가되었다.
- 강박 시행의 적정 관리 항목 추가되었다.
- 임상연구 수행 및 관리 등 항목 추가되었다.

***안전보장활동에 해당되는 범주**

- 환자안전
- 직원안전
- 화재안전

4차시-의료기관평가 인증제 : 2주기 급성기 인증조사 기준(2)

***의료의 질 용어 변화**

- QC→QA→TQM/CQI→PI

***구조평가**

- 의료제공자의 인력, 시설, 장비들의 자원, 작업여건 및 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질 관리의 접근방법중의 하나

***효율성**

- 어떤 효과와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5차시-의료의 질 향상(1)

***Clarify**

- 질 향상 대상의 파악, 변이나 질적 문제 확인 분석

***질 관리의 접근방법**

- ①구조평가의 접근
- ②과정평가의 접근
- ③결과평가의 접근

***올바른 문제 발견(주제선정) 방법**

- 다빈도, 고위험, 고비용,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 * 질 향상을 계획 할 때 목표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기관 수준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 측정가능하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 시간 계획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6차시-의료의 질 향상(2)

*Clarify

질 향상 대상을 파악하고 변이나 질적 문제를 확인 및 분석하는 방법.

7차시-의료의 질 향상(3)

*올바른 문제 발견(주제선정) 방법

다빈도, 고위험, 고비용,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주제선정은 활동의 효과가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 쉽고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질 향상을 계획 할 때 목표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①수준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측정가능하며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 ③시간 계획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④목표 설정 시 구체적이며 현실성, 실현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히스토그램

활동 단계별 QI Tool 종류 중 조사와 현황파악 및 결과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것.

8차시-환자안전관리(1)

*조사와 현황파악, 결과평가 시 사용 tool

프로세스 맵,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control, pareto, run, pie chart, histogram)

*4-Block matrix

개선방안이 요구하는 노력의 양과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하여 제안된 개선방안을 평가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 4-Block matrix를 통해 Fishbone에서 발견되어진 원인들을 '관리'와 '효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배열한 후 관리가 쉽고 효과가 높은 부분부터 먼저 개선한다.

*지표(Indicator)의 요건

- ①측정 가능해야 한다,

- ②질에 있어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
- ③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④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문제여야 한다.
- ⑤분자, 분모, 예외항목 등을 명확히 한다.

9차시-환자안전관리(2)

*위험관리 활동의 목적

- ①손상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 ②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
- ③의료사고 감소와 예방
- ④의료소송 등 사건의 발생빈도 감소

*효과적인 오류감소 전략을 위한 업무내용

- ①철저하고 믿을만한 근본원인 분석
- ②명확하고 계획된 개선활동
- ③경험적 정보의 전파
- ④환자안전관리 표준 수립

*안전사고의 원인

- ①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
- ②의사소통의 문제
- ③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문제상황
- ④한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환자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내용

- ①환자안전사고는 보고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 ②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③환자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④의료기관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의료기관내 환자안전관리 운영시스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적신호 사건은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재발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관내 환자안전관리 업무

- ①환자안전사고 분석/통계
 - 월별 전체통계
 - 진료/수술관련 분석
 - 시설관련 분석
 - Near miss 분석

- ②부서 개선활동 지원
- ③적신호사건 분석과 개선활동
- ④RCA 주관
- ⑤각종 교육 실시
- ⑥환자안전의 날 행사 주관
- ⑦안전조직 운영
- ⑧국제환자안전목표 현장모니터링 실시
- ⑨환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환자안전문화의 변화를 위해 리더십의 역할**

- ①안전 중심의 문화 확립
- ②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분석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
- ③모든 과정의 표준화
- ④효율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 ⑤적절하고 효율적인 Staffing 보장
- ⑥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 장려 및 지지“

10차시-병원감염관리(1)

*알콜젤을 이용한 손위생시 피부마찰은 기본이다.

***손위생**

가장 쉽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감염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COPQ**

수준 이하의 의료 제공 시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의 증가”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체비용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재촬영, 읽을 수 없는 처방전, 검사/수술취소, 잘못된 병동 설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낭비라 할 수 있다

***QI의 기본 원칙**

강력한 고객중심의 시각과 지속적으로 모든 과정의 향상,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자료와 팀 지식을 동원하여 의사결정을 향상시킨다.

***적신호 사건**

사망, 심각한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과 관련된 예측되지 않은 사건의 발생과 이를 발생시킬 위험(riskthereof)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①심각한 손상 : 사지나 기능의 손실이 포함 됨
- ② 손상을 발생시킬 위험 : 재발 시 심각한 위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의 변이

11차시-병원감염관리(2)

***무균술**

- ①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병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 ②환자와 환자 사이, 환자와 물품 사이에 병원성균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병원균이나 기타 다른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내과적/외과적으로 나뉜다.
- ④수술실에서의 손 씻기, 멸균지역의 준비, 드레싱 교환 등이 무균술에 해당되는 예이다.

***공기매개주의**

- ①표준격리에 추가하여 5 μ m이하의 작은 크기의 비말, 먼지 입자에 의한 공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
- ②가능한 1인실 음압방 배정(불가피한 경우 같은 균을 가진 환자 끼리 같은 병실 사용)을 권고한다.
- ③병실 문은 항상 닫아놓도록 한다.
- ④환자진료 및 접촉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환자, 보호자 교육 실시, 호흡기 에티켓, 마스크 착용법, 병실생활안내 등에 주의를 요한다.
- ⑤결핵, 수두, 홍역 등의 감염병일 경우 공기매개주의 지침에 따른다.

*외과적 수술시에는 반드시 멸균장갑 착용이 필수이다.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감염의 주요 요인들**

- ①다른 환자와의 접촉, 방문객 접촉
- ②의사, 간호사 의료인 개인 접촉,
- ③수술 및 창상 치료,
- ④공기(에어컨 이나 통풍장치),
- ⑤식품, 물
- ⑥주사 및 수액, 카테터
- ⑦매개물(옷, 침구, 기구, 책), 곤충 및 절지동물
- ⑧환자 자신의 내인성 감염, 정상 상재균총

***환경소독**

- ①환자의 혈액, 분비물 등과 접촉이 있는 장소는 환경소독제를 이용해 청소한다.
- ②일반사무실 등은 일반소독제 사용한다.
- ③대걸레는 세척 후 건조해서 보관한다.

12차시-병원감염관리(3)

***기도 분비물 흡인시 주의사항**

- ①기도분비물 흡인시에는 철저한 멸균법을 준수하여 감염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②흡인카테터와 증류수를 자주 교환한다.

③하기도까지 들어가는 카테터의 멸균 유지는 필요하다.

***중심정맥관 감염관리법**

- ①중심정맥관으로 약물주입 전 70% 알코올로 lumen 입구를 소독한다.
- ②카테터 제거 후 드레싱은 24시간 유지한다.
- ③수액세트 72시간마다 교체(lipid, TPN 24시간마다)한다.
- ④감염의심 시 혈액과 catheter tip을 배양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 ①환자의 치료장소나 병동에서 정리하거나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
- ②세탁된 세탁물과 사용한 세탁물은 다른 운반통을 이용하고 직물을 안전하게 묶은 상태에서 운반한다.
- ③세탁물 보관 장소는 주2회 이상 소독한다.
- ④ 사용한 세탁물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수거한다.

13차시-민원 및 의료분쟁관리

***불만고객 상담시 필요사항**

- ①상담자는 단정한 옷차림과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며, 필요시 필기한다.
- ②추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누락되지 않도록 재확인한다.
- ③상담자는 고객의 상담 내용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으로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 ④긴급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상담자가 직접 신속히 해결하여 가능한 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지 않도록 하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전화예절**

- ①소속과 이름을 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화자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
- ②메모지를 준비하여 중요한 통화 내용을 받아 적으며 확인하도록 한다.
- ③가급적 밝은 음성으로 통화한다.
- ④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정중히 듣고 타부서 업무인 관계로 전화를 돌려 드려야 함을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보고하는 자와 보고받는 자의 예절**

- ①보고는 간결하고 핵심만을 말하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여 간결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 ②보고할때는 상사의 얼굴을 주시한다.
- ③보고 받을 시 중간에 말을 끊거나 부정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부하직원이 오래 서서 보고하지 않도록 상사는 배려한다.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 ①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 ②환자에게 충실하게 설명한다.
- ③설명은 반드시 기록해 두도록 하며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 두도록 한다.
- ④의료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과실자증의 원칙(The thing speaks for itself)**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서 과실이 입증되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을 때를 말한다.

14차시-환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의료윤리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

- ① 진료받을 권리
- ②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알권리)
- ③ 자기결정권-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 ④ 개인 및 진료정보 보호받을 권리-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 ⑤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책임

- ① 치료계획 준수,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책임
- ②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다른 결과와 책임,
- ③ 원내규정 준수, 병 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 ④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경영진 인터뷰**

질 향상과 리더십 및 병원경영자의 리더십, 임상 의료진의 리더십은 물론 경영관리에 전반에 관한 사항, 의료윤리경영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간호사의 윤리덕목**

성실, 정의, 용기, 동정

***의료법상 간호업무**

진료보조, 영양방법에 대한 지도의무, 간호기록의 작성, 간호기록 보관 한다.

15차시-심폐소생술

***흉부압박**

- ①압박속도는 분당 최소 100~120회로 한다.
- ②환자가 성인일때 압박깊이는 최소 5~6cm로 한다.
- ③환자가 아동일때 압박깊이는 흉부전후직경의 최소 1/3 약 4~5cm로 한다.
- ④환자가 신생아(1세 미만)일때 두 손가락으로 한다.

***성인에서 구조요청 전에 기본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질식(asphyxia, primary respiratory origin)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될 때(외상, 익수, 약물중독 등)에는 구조자가 의료인이면서 혼자 있는경우 CPR 시행하도록 한다.

***소아기본소생술**

- ①단일구조자일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전문기도 유지장비가 삽입될 때까지)는 30:2 비로 한다.
- ②인공호흡 구조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경우 및 능숙하지 않은 경우는 흉부압박만 시도한다.
- ③전문 기도유지 장비 환기일 때 6~8초마다 인공호흡 1회(분당 호흡 8~10회) 실시한다.
- ④가능한 빨리 자동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사용한다.
- ⑤전기충격 전 후 흉부압박 중단을 최소화한다.

***기본소생술(BLS-basic life support)**

- ①심정지환자 발견즉시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
- ②주로 병원 처치 이전 단계

***전문소생술(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장비와 약물을 사용하며 시행하는 전문단계

16차시-CS교육

***보고하는 자와 보고받는 자의 예절**

- 보고할때는 상사의 얼굴을 주시한다.
- 보고 받을 시 중간에 말을 끊거나 부정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부하직원이 오래 서서 보고하지 않도록 상사는 배려한다.

***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상대방과 자주 마주칠 때 사용하는 인사의 각도**

- 15도

17차시-소방안전교육

***소화기**

- ①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
- ②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

- ③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 ④'소화기'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분말소화약제의 특징**

- ①고체상태로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가스압으로 분출시켜 소화시킨다.
- ②가연성 액체의 표면화재에 매우 효과적이다.
- ③전기화재나 일반화재에도 효과적이다.

***소화기사용법**

- ①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한다.
- ②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 ③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 쥘다.
- ④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화재시 업무분담 내용**

- ①소화반 : 소화기, 소화전 이용 화재 진압
- ②연락반 : 건물 내 관계자, 기관에 화재 통보
- ③화재발생 장소 근무자 : 초기소화+화재 통보
- ④피난유도반 : 환자, 보호자, 내원객 피난유도환자, 보호자, 내원객 피난유도
- ⑤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18차시-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세가지 특징**

인명존중 및 경영경제, 사회적 신뢰를 목적으로 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복잡·다양성, 강행성·규정성의 특징을 지닌다.

***산업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중대재해 사항**

- ①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시
- ②3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시
-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시 기재 사항**

- ①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②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③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조치요법
- ④추가 기입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19차시-근골격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로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한다.

- 유전, 성, 연령
-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음주, 흡연, 식생활습관, 가사노동
- 심인성 요인 등
-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제거는 불가능
- 지속적 관리에 의한 질환발생 예방/최소화가 목표
-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대책 실시만이 대안
- 조기발견→조기개선→작업부담의 경감/완화
- 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복귀
-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
- 예방운동, 근력강화 운동
- 자기관리능력의 강화"

*근골격계질환의 특성

- ①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한다.
- ② 치료 시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 ③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대책 실시만이 대안이다.
- ④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 ① 설비, 작업공정의 결함
- ② 작업량 과다
- ③ 불편한 작업자세
- ④ 작업환경 불량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 ① 물건을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든다.
- ② 허리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한다.
- ③ 허리를 좌우로 비틀지 말도록 한다.
- ④ 스트레칭을 자주한다.

20차시-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단계**

- ①제1단계-성희롱 고충의 접수
- ②제2단계-성희롱 상담 및 조사
- ③제3단계-확인 및 징계조치
- ④제4단계-행위자에 대한 결과 통지

***성폭력**

- ①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 ②“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시 적절한 대처방안**

- ①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②직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 혹은 노동부에 시정 신청,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한다.
- ③내용증명 발송
- ④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21차시-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령인식 및 병원인의 대처방안

***개인정보보호 원칙**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2차시-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의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을 뜻하는 것으로 즉,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근거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제3항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특정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아동학대의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된 기관으로서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5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할 상황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보호자의 훈육 상황은 아동학대 신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아동학대 신고의 방법

-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다.
-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추정나이, 학대의심 내용들을 자세하게 신고한다.
- 학대행위자의 이름, 성별, 추정나이,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 등을 자세하게 신고한다.
-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 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은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후 아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 학대받은 것은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3차시-말기 암환자 생활백서

*암환자의 심리반응 단계

- 제 1기 충격, 불안, 부정기
- 제 2기 반응성 우울기
- 제 3기 낙관기
- 제 4기 종교-철학에의 귀의기

*말기암환자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결정에 참여하기
-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기

24차시-취약환자권리보호